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임미애 · 박지원
이재정 · 장종태 · 안도걸
이상식 · 이정문 · 정춘생
강준현 · 김승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스톱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,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 금지,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,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.

또한, 현행 잠정조치는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·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톱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톱킹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 · 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며, 잠정조치는 스톱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

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또한,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·취소·변경·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,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,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·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,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나. 사법경찰관도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- 다. 잠정조치 유형으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을 추가함(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).
- 라. 잠정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,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7항).
- 마. 잠정조치로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등의 기준, 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2 신설).
- 바.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장을 추가하도록 함(안 제11조제4항)
- 사.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20조제5항 신설).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검사”를 “지방법원 판사”로, “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”을 “청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”을 “지방법원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”를 “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청구 또는 그 신청을”을 “청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사”를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검사”를 “관할경찰서의 장, 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본

문 중 “제4호”를 “제4호부터 제6호까지”로, “1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하여는”으로, “한정하여 각 3개월”을 “한정하여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각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상담소에의 상담위탁

6. 의료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(이하 이 조에서 “의료기관등”이라 한다)에의 위탁

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법원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⑨ 법원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스토킹행위자를 위탁하는 때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비용의 부담) 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스토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(豫納)을 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, 청구 및 지급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사와”를 “검사,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관할경찰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검사”를 “검사, 관할경찰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스토킹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)	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)
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<u>검사</u> 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<u>지방법원 판사</u> 에게 <u>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</u>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① ----- ----- <u>지방법원 판사</u> ----- ----- <u>청구</u> ----- . 이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삭 제>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<u>지방법원 판사</u> 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<u>청구한다</u> .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	
③ <u>지방법원 판사</u> 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제2항</u> 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항</u> ----- -----.

④ 사법경찰관은 <u>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.</u> ⑤ (생략) 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① <u>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</u> ② <u>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,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 ③ <u>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,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/u>	④ -----<u>지방법원</u>----- -----<u>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① <u>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</u>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<u>청구를</u>----- -----. <삭 제>
---	---

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.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, 그 법정대

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-----

-----.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상담소에의 상담위탁

6. 의료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의료기관등”이라 한다)에의 위탁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관할 경찰서의 장, 검사-----

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⑦ 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제4호부터 제6호
까지-----2
개월-----.

-----대하
여는-----한정하여, 제4
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잠정
조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
정하여 각 기간-----

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을
한 상담소의 장은 그 결과보고
서를 법원과 검사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⑨ 법원은 제1항제6호에 따라
의료기관등에 스톱킹행위자를
위탁하는 때에는 의료기관등의
장에게 스톱킹행위자의 관리를
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준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(잠정조치의 변경 등) ①
~ ③ (생략)
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

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
우 그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
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
받아야 한다.

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
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
의료기관등의 기준과 위탁의
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(비용의 부담) ① 제9조
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
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
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
다. 다만, 스토킹행위자가 지급
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
가 부담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
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
납(豫納)을 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
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, 청구
및 지급 절차, 그 밖에 필요한
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잠정조치의 변경 등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
조치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<u>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</u>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<u>검사, 스토킹행위자의 사건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관할경찰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과</u>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검사,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, 그 법정대리인</u>: 취소,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	1. <u>검사, 관할경찰관서의 장,</u>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벌칙) ① ~ ④ (생략)	제20조(벌칙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⑤ <u>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스토킹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